

알아두면 요긴한 생활법률용어

법률 지식을 몰라 크고 작은 분쟁에 부딪쳤을 때 난감할 때가 많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법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두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 내용증명

-통보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시켜 주는 것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그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라고 한다.

예컨대 돈을 달라고 백날 말로만 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언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대책이 없다. 이럴 때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요즘은 경고 내지는 통보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시켜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효과도 결코 무시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앞으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작성요령** : A4용지에 한 쪽 면만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내용을 정정하거나 삽입할 때 화이트 같은 것으로 지워서는 안되고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며, 정정 또는 삽입하는 글자에는 발송인의 인장이나 징장을 찍어야 한다고 한다. 요금은 원본 1장당 1천원이며 등기수수료 2천4백90원이 붙는다.

- **발송방법** :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2부 복사해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 접수 창구에 제출 한다. 1부는 자신이 갖고 있고,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게 된다. 편지봉투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 우체국 취급 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해 등기 접수하면 된다고 한다.

- **주의 사항** :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소액심판

-2천만원 이하 돈을 쉽게 받고자 할 때

민사 재판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특히 소액 채권자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다고 한다.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보통의 재판 절차보다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심판제도라고 한다. 법원에 소장 서식 용지가 항상 비치돼 있으므로 직접 소장을 작성해 신청 할 수 있고, 법원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해(보통 14일 이내)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에 종결하도록 돼 있으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 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던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반대로 원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 기일을 지정한다. 그 변론 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는 집달관이나 집행 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뢰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면 된다.

◆ 가압류 · 가처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자 할 때

가령 채무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전부 빼돌린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주택을 사서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오든지, 채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강제로 입주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는 얼마든지 채권자를 골탕먹일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채권자라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강제로 집에 입주하면 오히려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히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 · 가처분이라고 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해, 가처분은 물건에 대해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 · 가처분은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므로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 기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한다.

◆ 민사조정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는 법적 절차

소송과 달리 서로 한발씩 양보해 화해하는 절차이다.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법적 절차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해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조정조서의 효력은 판결문과 같기 때문에 조서 내용대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 자급명령

-적은 비용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

구슬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제도라고 한다. 채권자로 하여금 일반의 소송 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는 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 유가 증권에 한정돼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채권의 액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또 복잡한 증거 서류를 첨부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있게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다고 한다.

상대방이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여 주도록 법원에 신청을 한다.

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때부터 다시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위 지급 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 소멸시효

-일정기간 경과 후 이뤄지는 권리의 소멸

시효란 간단히 말해 시간의 경과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한다. 소멸 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한다.

예컨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위법한 상태)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이 그 돈을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시효의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라고 한다. 다만 상사로 인해 생긴 채권은 5년이라고 한다.

소비자 거래로 인한 채권 등은 3년이며 숙박업소의 숙박료와 입장료 등은 1년이라고 한다.

◆ 구상권

-빚 갚아준 사람이 돈을 받아 낼 권리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반환청구권이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빚을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빚을 진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한다.

예컨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은행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갔거나 사업이 망해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한테서 돈을 받아 간다. 이 때 보증인은 갚은 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원래 돈을 빌렸던 사람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을 갖는다고 한다.